

## ●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-12호

「전파법」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-16호, 2021.10.1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06월 30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###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개정

「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」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(자속밀도)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.

1.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
2.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

제3조 중 “2019년 7월 1일” 을 “2024년 1월 1일” 으로, “6월 30일” 을 “12월 31일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「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